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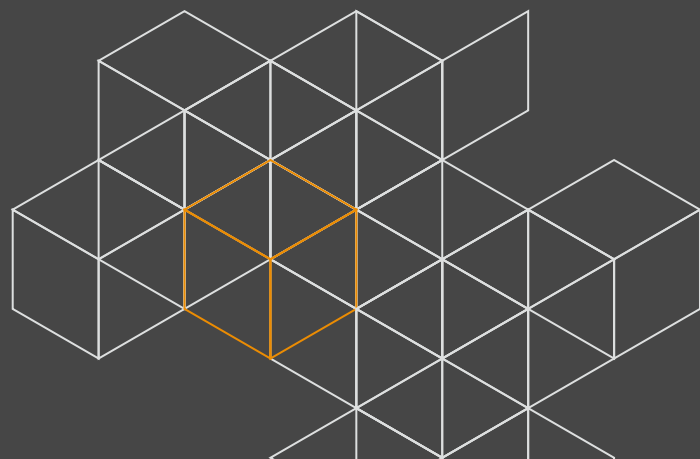


PwC 베트남 뉴스레터

베트남 현지 수출입 규제 폐지 제안



www.pwc.com/vn



세부 사항

2023년 5월 29일 관세청 (“GDC”)은 베트남 현지 수출입 거래에 대한 시행령 08/2015/ND-CP 제 35조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문 2587/TCHQ-GSQL 및 2588/TCHQ-GSQL을 발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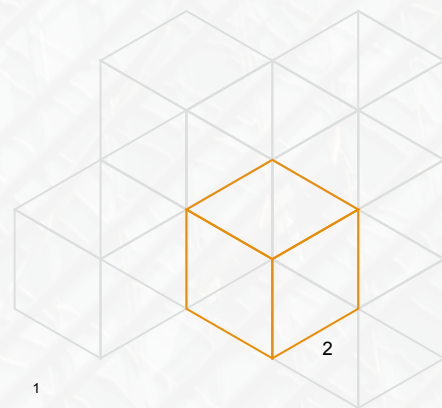
시행령 08/2015 제 35조에 의해 현지 수출입 거래에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i) 외국 무역업자와의 임가공 계약 하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베트남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되는 재화; (ii)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해외 조직 또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로, 외국 무역업자와 베트남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 간의 합의에 따라 재화가 인도 또는 수령되는 경우 등.

GDC는 위의 제 35조에 규정된 현지 수출입 거래를 폐지하여 현지 수출입 거래를 국내 거래로 취급하는 대체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관련된 외국 무역업자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대행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위의 제안이 승인될 경우 현지 수출입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들, 특히 외국 당사자와 임가공 또는 제조 계약을 맺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입 절차의 변경 외에도 수입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환급에 대한 처리 방법 또는 재화가 외국 무역업자에게 판매되었으나 다른 베트남 법인에 인도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VAT 등과 같은 기타 주요 이슈도 존재합니다. 많은 이슈는 정부의 신중한 연구 및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PwC는 향후 주요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동 제안을 검토하며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는 동안 기업들은 현행 사업 모델을 검토하며 사업 활동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PwC에 연락주시십시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nh Thi Quynh Van

Partner

dinh.quynh.van@pwc.com



손한희 – 호치민 사무실

Directo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son.hanhee@pwc.com



Nguyen Thanh Trung

Partner

nguyen.thanh.trung@pwc.com



우정균 – 하노이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jung.kyun.woo@pwc.com



www.pwc.com/vn

